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56155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4. D

변론 종결 2018. 7. 25.

판결 선고 2018. 8.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093,282원 및 그 중 254,092,797원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18. 2. 2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가 2017. 1.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283,818,6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3,818,6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이 2016. 10.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23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2015. 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5. 1. 7.부터 2016. 1.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5. 1.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 2) 원고는 2015. 12. 18. 피고 A의 신청에 따라 제1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7. 1. 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7. 1. 25.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8. 1.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1) 피고 B의 처인 피고 D은 피고 B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23016호)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 2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2억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원인으로 같은 해 2. 9. 각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제11970호)를 경료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이 2017. 5. 31.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8. 4.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255,866,567원(= 원금 252,617,926원 + 이자 3,248,6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2017. 8. 7. 1,773,77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254,093,282원(= 대위변제원금 254,092,797원 +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485원)이고, 이 사건 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 피고 A, B, D : 자백간주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보증약정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제2보증약정은 체결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은 제1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만료일 후부터 제2보증약정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 A과의 대출약정을 보증소멸을 이유로 종료시키지 아니하였고, 이는 위 사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신용보증사고에 대해서도 원고가 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갹신보증을 사후에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사실, 실제로 원고는 제2보증약정을 종전 제1보증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증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도 제2보증약정이 갹신보증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7. 1. 2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피고 A, B사이의 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 후 4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A의 재산상태 앞서 증거 및 이 법원의 권선구청장, 예산군수, 화성시장, 화성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E조합, F기관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1)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06,039,249원이고, 소극재산2)은 5,287,19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적극재산	수원시 권선구 G 대 163 m ²	146,700,000	소극재산	원고	255,866,000
H대 1048m ²	1,215,680,000	I단체 서인천지점	571,000,000		
H 건물	106,947,000	I단체 서울시	591,000,000		
J도로 6㎡	2,133,600	기술보증기금	847,425,000		
K 도로 6㎡	2,133,600	L	14,940,000		
M 도로 18m ²	6,400,800	기업은행	1,886,750,000		
N,O 공장용지 1271㎡	1,143,900,000	P	24,043,000		

적극재산	수원시 권선구 G 대 163 m ²	146,700,000	소극재산	원고	255,866,000
N,O 건물	139,480,000	Q	27,250,000		
R 도로 40m ²	14,224,000	S	175,000,000		
T 공장용지 1972 m ²	1,597,320,000	U	43,920,000		
	V 공장용지 469m ²	422,100,000	E조합(2005. 5. 10.자)	200,000,000	
V 건물	51,480,000	E조합(2006. 1. 16.자)	50,000,000		
W 도로 54m ²	19,202,400	E조합근저당채무	600,000,000		
충남 예산군 X 임야 26㎡ 중638/2268 지분	1,752,983				
Y 임야 623㎡ 중 2104.18/2268 지분Z 임야 1615㎡ 중62706044117/805739650000지분AA 임야 27 m ²	34,680,0511,202,815702,000				
	4,906,039,249		5,287,194,000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이 별지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위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 위 매매계약의 체결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별지1부동산에 관한 매매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2) 별지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앞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1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716,000,000원,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권최고액 546,000,000원,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2017. 1. 24. 당시 피담보채무액 6억 원3))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2. 27. 말소된 사실, 2016. 7. 14. 무렵 별지1부동산의 시가가 4,867,701,4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별지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67,701,400원(= 4,867,701,400원 - 1,716,000,000원 - 624,000,000원 - 221,000,000원 - 546,000,000원 - 208,000,000원 - 585,000,000원 - 6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83,818,658원 [= 254,093,282원 + 254,092,797원에 대한 2017. 8. 7.부터 2018. 2. 27.(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10%(약정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2018. 7. 25.(변론종결일)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 합계 29,725,376원{= 14,270,965원(254,092,797원 × 0.1 × 205/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15,454,411원(254,092,797원 × 0.15 × 148/365)}}으로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283,818,658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283,818,6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83,818,6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동환

판사강하영

판사신세희

별지

1) 2016. 7. 14. 기준 감정평가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기초로 한 금액보다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이 더 크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원고는 F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016. 10. 28.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7. 1. 24.이므로 이에 가까운 일자의 소극재산을 인정한다.

3) 2018. 3. 12.자 회신